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파주시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경기도 파주시
○ 제 조 사 · 공 급 사 : ㈜피씨엔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7년 파주시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상기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약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 이내로 한다.

구분	세부 내역	협약가격	비고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광선로통합관리솔루션 v1.0 등 73식	41,984,000원	

※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일할 계산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본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간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 월 16 일

발 주 기 관 명　　파 주 시 청 ㊞

제 조 사 · 공 급 사 명　　㈜ 피 씨 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파주시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경기도 파주시
○ 제 조 사 · 공 급 사 : 지니언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7년 파주시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상기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약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 이내로 한다.

구분	세부 내역	협약가격	비고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C30_R1 등 56식	56,273,000원	

※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일할 계산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본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간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 주 기 관 명　　파 주 시 청 (인)

제 조 사 · 공 급 사 명　　지 니 언 스 ㈜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파주시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　주　기　관 : 경기도 파주시
○ 제 조 사 · 공 급 사 : 휴네시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7년 파주시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상기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약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 이내로 한다.

구분	세부 내역	협약가격	비고
망연계 솔루션	i-oneNet V5.0 등 3식	13,867,200원	

※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일할 계산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본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간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 주 기 관 명　　파 주 시 청 (인)

제 조 사 · 공 급 사 명　　휴 네 시 온 (인)

PAJU